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남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42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8.

발 의 자 : 박남춘 · 황 희 · 신동근

김두관 · 윤관석 · 박용진

손혜원 · 강병원 · 이재정

박찬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·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·향응제공, 후보자비방,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, 비방·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·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.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이 장을”을 “제24조부터 제30조의2까지, 제35조제5항, 제36조 및 제38조는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기만료에 따른 의무위탁선거: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

지

2. 임기만료에 따른 임의위탁선거: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

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7조(적용 제외)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제66조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 · 제9호 · 제11호 및 제68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관리의 위탁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8조제2호에 따른 위탁신청을 한 공공단체 등은 이 법 시행일 후 7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의 위탁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신청은 무효로 한다.

제3조(별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
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
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
한다. 다만, 제65조는 그러하
지 아니하다.

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
에는 제66조제1호부터 제7호의
2까지 · 제9호 · 제11호 및 제6
8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
니한다.